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49)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2. 11.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2. 14.
- 라. 위원회 심사 : '98. 12. 24.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은 구의 적립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다. 관련법규

-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4. 검토보고요지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한 것으로 이는 천재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의 예방과 피해 발생시 수습·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예방과 수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연월일 : 1998.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기금은 구의 적립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안 제2조).
- 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안 제4조②).
- 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다(안 제4조③).
- 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

3. 근거법규

- 가. 재난관리법 제56조
- 나.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98.11.14~'98.12.3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입법예고하고, 제정조례안의 전문을 민원실, 동사무소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비치·공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음.

나.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용도
2.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재난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운용될 수 있도록 하되, 적립기금은 울산광역시중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④대규모 재난으로 당해연도 운용기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채권의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자) ①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용자는 총 소요금액의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1인당 용자한 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용자조건 등) ①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당해 재난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중구안전대책위원회(이하“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용자에 대한 이율은 연리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용자신청절차·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